별지서식 제4호(제5조 관련) (2015. 1.19 신설)

인감대조

담보관리약정서(특전금전신탁용)

자본재공제조합 귀중

약정일자 : 년 월 일

| 약 정 인 | 주 소 |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| 상 호 | |
| | 대표자 | (1) |

제1조(담보관리) ①약정인은 자본재공제조합(이하"조합"이라 한다)으로부터 보증채무약 정서에 의해 아래 제2조에서 선택한 피담보채무 범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<u>금</u> 원을 조합에 담보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특정금전 신탁을 통해 담보관리 하는데 동의한다.

②이 담보는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한 제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효력을 가지며, 만일 이 담보관리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업무거래정지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더라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

제2조(피담보채무의 범위)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에서 약정인이 선택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다.

| 구 분 | 채무의 범위 | 선택란 (인감날인)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|
| 포괄근담보 | 보증채무약정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 | |
| 한정근담보 | 년 월 일자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 | |
| 특정채무담보 | 년 월 일자 ()보증채무약정서(개별거래용)에 의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 | |

- 제3조(담보관리 절차 및 운용) ①약정인은 위 담보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조합과 담보관리를 위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, 담보금액은 동신탁계좌로 입금한다.
 - ②약정인이 선급금공동관리 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특정금전신탁 계좌가 있을 경우 동 담보관리를 위하여 계좌를 공동으로 이용한다.
 - ③약정인은 원금의 손실이 없는 범위내에서 금융상품을 선택, 운용하도록 금융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.
 - ④약정인은 조합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, 일부해지, 중도해지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조합은 이로 인하여 담보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.
- **제4조(약정기간)**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제2조에서 약정인이 선택한 채무의 소멸기한까지로 한다.
- 제5조(수익자와 수익권)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수익자와 우선수익자는 다음과 같다.
 -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 : 약정인
 -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우선수익자 : 조합
- ②약정인은 우선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권을 가지며, 수익권은 조합이 금융기관에 수익권 지급지시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.
- **제6조(우선수익자와 우선수익권)** ①조합은 신탁계약과 동시에 약정인의 수익권에 우선하는 우선수익권을 갖는다.
 - ②조합이 갖는 우선수익권의 수익범위는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하여 조합과 거래에서 발생한 제채무, 제비용, 지연이자, 손해금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의 우선수익권 한도는 담보제공금액의 잔액 및 우선수익권 실행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한다.
 - ③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인의 사전동의 없이도 우선수익 권을 실행하여 담보관리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.
 - 1. 보증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
 - 2. 보증채무약정서상의 기한이익 상실 및 사전구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**제7조(담보관리금액 인출요청)** ①약정인은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담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인출요청을 할 수 있다.
 - ②약정인의 인출요청에 대하여 조합은 담보의 반환기준에 해당될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를 함으로써 약정인은 요청한 담보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.

- ③조합은 약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- 1.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인출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
- 2. 약정인의 수익권에 대한 지급정지, 제3채권자의 (가)압류 등으로 지급 요청한 신탁 목적물이 당해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약정인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제작 또는 설치 중단, 하도급대금체불, 노임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
- 4. 기타 조합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8조(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) 약정인 및 조합은 담보제공한 신탁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- 제9조(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) 약정인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담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조합과 금융기관이 보증정보, 지급계좌정보 및 계좌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데 동의한다.
- 제10조(합의관할) 이 약정서에 의한 소송은 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 다만, 약정인 또는 조합이 관할 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다.